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37

발의연월일: 2024. 7. 29.

발 의 자:서천호·김예지·김선교

우재준 • 안철수 • 조경태

최형두 • 백종헌 • 김장겸

정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아동학대행위자의 70% 이상이 친권자이고, 이들에 대한 친권의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만이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할 수있도록 한 것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,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, 아동권리보장원의 장,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,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를 보다

두텁게 하려는 것임(안 제9조).

법률 제 호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 본문 중 "검사는"을 "검사,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,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, 아동권리보장원의 장,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,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 (이하 "검사등"이라고 한다)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검사가"를 "검사등이"로, "검사에게"를 "검사등에게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검사는"을 "검사등은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9조(친권상실청구 등) ① 아동 제9조(친권상실청구 등) ① ----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 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 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 사,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 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 권자 또는 후견인, 피해아동을 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「민 보호하고 있는 사람, 아동권리 법ᅟ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 보장원의 장, 아동보호전문기관 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 의 장,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(이하 야 한다. 다만, 친권상실의 선 "검사등"이라고 한다)은----. 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 ② 검사등이-----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 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•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 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 검사등에게----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

구를 요청받은 <u>검사는</u> 요청받	검사등은
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	
결과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	
・군수・구청장에게 통보하여	
야 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